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4가단32855(본소) 채무부존재확인

2015가단109585(반소) 손해배상(자)

원고(반소피고) *****보험 주식회사

서울

대표이사 김**

소송대리인 남**

피고(반소원고) 000

서울

변 론 종 결 2015. 7. 23.

판 결 선 고 2015. 8. 13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4. 5. 31. 01:00경 서울 송파구 **동 **고등학교 부근에서 피고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 위 차량을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(반소피고)의 피고(반소원고)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은 772,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5. 31.부터 2015. 8. 1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- 2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814,734원 및 그 중 772,734원에 대하여는 2014. 5. 31.부터, 42,000원에 대하여는 2015. 4. 15.부터, 각 2015. 8. 1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3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다.
- 4.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- 5.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본소: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(반소 피고, 이하 '원고'라고 한다)의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 한다)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반소: 원고는 피고에게 7,262,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5. 31.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**보**** 에스엠3 차량(이하 '원고 측 차량'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보험자 △△△과 별지 기재와 같은 대인, 대물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. 나. 피고는 2014. 5. 31. 01:00경 서울 송파구 **동 **고등학교 부근 차선 없는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자전거를 운전하여 우측으로 역주행하다가 위 도로 옆 건물 안쪽에서부터 위 도로 가장자리의 주차금지선을 약간 침범한 부분까지 가로등 밑에 주차되어있던 검은색의 원고 측 차량의 주차금지선을 침범한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, 이로인하여 피고는 비골의 골절, 폐쇄성 및 비중격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, 위 자전거는 수리비 3,192,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되었다.

다. 피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2014. 5. 31. 치료비 346,270원, 같은 해 6. 3. 치료비 127,800원을 각 지출하였고, 같은 해 6. 9.부터 같은 달 12.까지 ****병원과 의료법인 **의료재단 **병원에 입원하여 폐쇄정복술 및 비중격 교정술 등을 받으면서 치료비 640,320원(= 13,600 + 325,720 + 12,000 + 6,000 + 283,000)을 지출하였으며, 같은 해 6. 13. 치료비 13,600원을 지출하여 합계 1,127,99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.

라. 피고는 2014. 7. 8. 원고에게 원고 측 차량 수리비로 420,000원을 지급하였다. 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1 ~ 2-5, 4-1 ~ 4-5, 을 1 ~ 8, 변론 전체의 취지 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 측에는 주차금지 구역을 침범하여 주차한 과실이 있고, 이러한 과실이 위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나. 손해배상의 범위

1) 일실수입 : 407,358원[= 29,839,000원(2014. 3. 14.부터 같은 해 12. 31.까지의 총 급여) ÷ 293일(같은 기간의 일수) × 입원기간 4일]

2) 치료비 : 1,127,990원

3) 자전거 수리비 : 3,192,000원

4) 교통비 : 피고는 자전거 파손으로 인해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비 460,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5) 과실상계: 원고 측 차량의 주차금지선 침범 정도, 원고 측 차량이 가로등 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을 90%로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472,734원[= (407,358 + 1,127,990 + 3,192,000) × 0.1]이 된다.

6) 위자료: 제반정상에 비추어 보면 300,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.

다. 부당이득 반화청구권

원고는 피고에게,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원고 측 차량 수리비 420,000원 중 원고 측 과실 10%에 해당하는 42,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라. 소 결

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772,734원 및 부당이득금 42,000원의 합계 814,734원 및 그 중 위 772,734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4. 5. 31.부터, 위 42,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. 4. 15.부터, 각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. 8. 13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위 사고와 관련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772,734

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5. 31.부터 2015. 8. 1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.

3. 결 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다.

판사 박지원

[별지 생략]